



APR CORP.

공급망관리정책

목차(INDEX)

제 1 조	(목적).....	2
제 2 조	(적용범위).....	2
제 3 조	(지속가능한 구매).....	2
제 4 조	(협력사의 책임).....	3
제 5 조	(공급망 실사 프로세스).....	3
제 6 조	(커뮤니케이션).....	3
제 7 조	(규정의 개폐).....	3
부칙	4
<Ver. 1.0, 2026. 3. 13.>	4
<Ver. 2.0, 2026. 4. 20.>	4

제1조 (목적)

주식회사 에이피알 및 국내외 자회사(이하 '회사')는 공급망 전반의 지속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공급망관리정책(이하 '본 정책')은 회사 및 협력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인권, 안전, 환경,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 보호, 윤리 등의 영역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며 상호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① 본 정책은 에이피알의 본사, 국내외 자회사의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 ② 회사의 서비스·제품 출시에 활용되는 재료 및 서비스를 설계, 판매, 제조 또는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협력사는 본 정책의 적용을 받는다.
- ③ 회사가 서비스·제품을 생산하여 이용자에게 유통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본 정책의 적용을 권장한다.

제3조 (지속가능한 구매)

- ① 회사는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규 협력사 선정 및 기존 협력사와의 거래 유지를 판단할 때 재무·경영, 품질·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② 회사는 원재료 및 광물 조달 과정에서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원재료 사용을 확대한다.
 1. 팜유 및 면화
팜유 및 면화와 같이 환경 및 인권 이슈와 연관된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과 같은 원칙을 준수한다.
 - 가. 팜유 사용 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원재료 사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속가능성 기준을 고려한다.
 - 나. 면화 사용 시 환경 및 인권을 고려한 책임 있는 생산 방식이 적용된 원재료 사용을 지향한다.
 - 다. 공급업체에 대해 산림 훼손 방지, 생물다양성 보호,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등 책임 있는 생산 원칙 준수를 요구한다.
 - 라. 향후 주요 원재료에 대해 지속가능 원재료 사용 비중 확대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2. 분쟁광물
주석(Tin), 탄탈럼(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 등 이른바 분쟁광물(3TG) 사용 여부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확인하고 관리한다.
 - 가. 공급업체에 대해 분쟁지역 또는 고위험지역에서 채굴된 광물 사용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나. 분쟁 및 인권 침해와 관련된 광물 사용이 확인될 경우, 대체 원재료 검토 또는 공급망 개선을 요구한다.
 - 다. 관련 법규 및 국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책임 있는 광물 조달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 (협력사의 책임)

회사의 협력사는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행동규범'을 숙지하고 환경 보호, 인권 존중, 안전 관리, 품질 관리, 준법·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5조 (공급망 실사 프로세스)

회사의 공급망 실사 프로세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 스크리닝

계약 체결 전 협력사 선정 프로세스를 통해 예비 협력사의 재무·경영, 품질·기술,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주요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는 단계별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구매·품질·R&D 등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한해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회사는 공정거래를 실천 및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

2. 협력사 평가

경영관리, 품질관리, 생산 역량, 구매 이슈 이력 등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협력사에 대해 정기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기준에 따라 등급화하여 관리하고, 미흡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 사항을 안내하고 조치를 취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 필요도가 높은 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사를 진행한다.

3. 사후 관리

연 1회 협력사 실태 조사서를 갱신하여, 경영·품질·재무 현황과 ESG 관리 체계의 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6조 (커뮤니케이션)

회사는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정책을 개선한다. 또한 주요 활동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협력사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

부칙

<Ver. 1.0, 2026. 3.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3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Ver. 2.0, 2026. 4.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20일부로 제정 시행한다.